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30주년
기념공연

김수남 작/연출

다
같은
사람인데

때/1986년 6월 21~22일

21일 오후 7시

22일 오후 3시, 7시

곳/충의음악당

후원/이영희·가족법 개정을 위한 여성연합회



이태영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가족법개정운동이 본 상담소를 통해 전개된 지도 어언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때로는 투쟁으로, 때로는 연합운동으로, 때로는 강연회나 가족법 강좌를 통해서, 때로는 공격이나 압력을 가하면서 필사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해 왔건만 아직도 이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가족법개정운동이란 누구의 자리를 빼앗거나 누구의 권리를 빼앗고 자기 자리를 되찾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악법을 바로 고쳐 누구나 다같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가족 구성원이 되어 사람답게 살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체계묵은 인습과 허울좋은 겉치레뿐인 법을 시대에 맞게 바로 고쳐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사람세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든 가족법이 개정되는 것만이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진정한 민족 발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우리는 또한 반드시 이 운동이 실현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하여 이 운동 30주년을 기념하여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가족법개정에 대한 의의와 문제를 던지고 우리로 하여금 가족법에 묶인 처참한 현장의 증인이 되도록 생생한 아픔과 고통을 전달해 준다는 의미에서 이번 연극공연 <다같은 사람인데>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영희 멤버로 구성된 출연진은 전문연극인도 아니고 이 계통에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 순수한 주부들입니다. 이들의 진실하고 투박한 의지가 너무나 가상하여 나는 서슴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무대에서 연기를 읽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 숨은 이들의 뜻과 용기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 연극이 바라는 것



김수남

미국 뉴욕대학 공연학 석사 연극·영화 연출
청주대학교 예술대학 전임강사
한국연극협회 제작분과, 연출분과위원
국제 아동청소년 연극협회 간사
I.T.I 정회원
극단 「거론」 대표

오늘날 우리 시대가 회구하는 이념은 무엇보다도 자유와 평등 원칙의 민주주의 실현일 게다.

이 땅의 우리 여성에게 있어서 자유와 평등 원칙의 실천은 꼭 쟁취해야 할 그들의 지고한 이상임에 틀림없으리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자이기 때문에 당해야 하는 불평등과 지배복종 관계의 강요는 인간 차별의 역사가 시작되는 투쟁의 씨앗을 잉태시켰다 한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도 여권신장을 위한 운동이 세차게 번지고 있는데, 이렇듯 여기저기서 여성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모임과 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여권신장 문제들이 하나의 사회문제로서 신중하게 받아들여지게 된 현실이 오늘의 우리 사회다.

UN여성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실비아 앤·홀레트라는 여성지도자는 “세계의 여성운동이 삶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가지 전략을 연구해왔으며, 그 결과로 여성의 법적·심리적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행동주의 진영과 사회적 개혁 및 경제적 혜택을 추구하는 실리적 진영으로 나뉘게 됐다”고 분석한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여성지도자 홀레트의 주장을 실천해 온 여성단체가 바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번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준비되고 있는 연극 〈다같은 사람인데〉의 공연목적과 내용을 보더라도 여성지도자 홀레트의 분석된 연구를 이해할 수 있겠다. 더우기 연극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주부들이 모여서 연극을 통해서 그들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고자 직접 나선 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극성 주부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전통적인 우리나라 가부장제도의 불평등관계의 계급생활체를 타파하고자 노력하는 주부들의 바람직한 모습을 대하는 것 같아 가슴 뿌듯하다.

겉없이 연극을 하겠다고 나선 주부들을 처음 대했을 때, 내가 연극을 만난 인연이 이거였던가? 당혹한 마음 숨길 수 없었으나, 진지한 그들의 모습을 연습장에서 지켜보노라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여권신장운동은 우리 어머니들의 또 다른 모습의 과시임을 의심치 않는다.

바쁘신 가정생활을 뒤로 하시고 힘든 공연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배우님들, 특히 육순의 연세를 모르듯 즐거운 마음으로 저와 같이 뛰어 주신 전성숙님과 원이섭님께 감사드린다.

몸으로 전하는 여성의 소리 모든 이의 공감대 형성했으면



이윤정
이영회회장

이 땅에 가족법개정운동이 시작된 지도 어언 30년이 넘어섰습니다. 이 30년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여성들의 땀과 눈물로 점철된 세월이었습니다. 이러한 각고는 비인간적이고 불합리한 가족법의 일부 개정으로 결실을 보았읍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고 험합니다.

이제 가족법개정운동의 선구자적 길을 개척해온 가정법률상담소의 창립 30주년을 맞아 공연되는 기념연극 <다같은 사람인데>는 우리 여정의 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불합리한 가족법으로 인한 피해는 단지 법조항을 적용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지배하게 되어 생활의 구석구석에서 억압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법개정운동이란 법조항의 개정에만 머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남녀차별적인 문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인간상의 왜곡과 고통을 이해하고, 이러한 비인간적인 문화의 뿌리를 뽑겠다는 우리의 공통된 인식을 다듬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무대에 오르는 <다같은 사람인데>는 이러한 현실을 꼬집고 풍자함으로써 가족법개정운동 아래 깔려 있는 인간적인 진실을 밝히는 작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업에 우리 이영회가 동참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의 이태영 소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영회가 앞으로도 가족법개정의 멀고 험한 길을 함께 하는 모임이 될 것을 기약하면서, 가족법개정운동에 대한 많은 분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기획부

남편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법정에 선 한 여인(김민자)의 사실심리 공판으로부터 시작되는 <다같은 사람인데>는 남녀를 차별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와 가족법이 2세대에 걸쳐 야기시킨 가정의 비극을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자신의 법적 지위에 무관심한 채 살아가는 전 여성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한편 가족법개정의 필연성을 역설한다.

①

막이 오르면 무대 중앙에 피고의 모습이 보이고 그 양쪽에 변호사와 검사가 앉아 있다. 검사에 따르면, 피고는 밤늦게 귀가한 남편이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무서운 고통을 호소하며 거실 바닥에 쓰러졌을 때, 남편을 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 응급조치할 생각은커녕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남편을 방관했다는 것. 그러나 변호사는 평소 피고가 남편으로부터 받아온 정신적, 육체적 핍박을 지적하는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원이 증인으로 출두하여 오늘날 한국 여성들이 당해야 하는 불평등한 권익에 대해 간략히 증언한다.

②

무대의 2장, 3장, 4장은 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의 가족적 배경을 시누이의 증언을 통해 보여주는데 그 증언 내용이 무대조명에 따라 무대 위에서 입체적으로 구성된다.

2장의 무대는 딸의 거실.

“유령이야, 유령!”을 외치는 어머니를 보다가 객석 쪽으로 다가서는 딸은 그 <유령>의 내력을 밝힌다. 동성동본이어서 평생 혼인신고도 못했던 부모님.

아들이 없다 하여 다른 여자에게서 이들을 얻은 아버지. 아버지의 죽음으로 집안의 모든 재산과 호주상속을 이어받은 세살짜리 아들. 아들과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 어머니. 이처럼 가족법의 횡포가 극단적으로 표출된 집안의 내력이 아들세대에 와서는 그치지 않고 연일 아들타령으로 양자입적이니 합의이혼이니 하며 부부싸움이 일어나자, 어머니는 죽은 남편을 보는 듯하여 이들을 <유령>이라고 부른다는 것.

③

제3장의 무대는 아들네집 거실.

가족간에 나누는 대화 속에 뿌리깊은 경멸과 원망과 증오가 담겨져 있다. 잦은 외박을 탓하는 아내와 “아들도 못낳는 주제”라며 험담을 퍼붓는 남편사이의 부부싸움을 중재하려던 어머니에게 아들은 독설을 내뱉고 나가버린다.

④

다시 무대는 딸의 거실로 바뀌고 가족법의 모순을 규탄하는 딸의 강변이 시작된다. 호주제도로 인해 아들만이 사람대접받고, 서자 입적이 아내 동의없이 이루어지며, 아내가 자녀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장인, 장모에게 재산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으면서 남편의 경우 자식이 없다면 남편 재산을 아내는 시부모와 공동상속해야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인데도 남편 명의로 등록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남편이 유산을 받은 아내는 엄청난 상속세를 물어야 하는 등 가족법의 모순 때문에 자신의 어머니, 올케, 자신이 겪어야 했던 억울한 삶을 호소한다.

5

5장, 6장, 7장은 아내의 경우 시아버지의 8촌, 시어머니의 4촌까지 친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가족법이 남편의 경우 장인, 장모만을 친족으로 인정하는 모순을 지적한다.

가족법상 친족의 범위를 강조하는 매부를 의식해서 여동생의 집앞까지 왔으나 거리에서 서성대던(제5장) 오빠는 동생을 따라 집안에 들어선다. (제6장) 근황을 묻는 오빠에게 여동생은 “그이를 독살시켜 버리고 나도 자살하고 싶다”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한다. 독극물 사용을 농담조로 꺼내보는 오빠의 말을 우연히 엿들은 남편이 방에서 나와 아내를 때리자 처남은 매부를 강제로 밖으로 끌어낸다. 아파트 앞 네거리로 끌려나온 남편은(제7장) “처남은 법적으로 남이라며 살인공모죄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처남과 남편은 주먹다짐을 하며 퇴장.

6

무대는 다시 법정(제8장) 검사, 변호사, 재판관이 나와 독극물 사건을 각자 나름대로 해석한다. 검사는 계획적인 완전범죄의 증거로 이를 받아들이는 반면 변호사는 사소한 애기에 대한 남편의 신경질적인 과민 반응으로 설명하자 재판관은 사건의 진실을 놓고 고민한다.

9장, 10장, 11장의 무대는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시누이의 진술이 재구성된 것인데, 이 땅의 여성들이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그려주는 한편 남편의 마음을 들여보려던 아내의 선의가 불신의 장벽에 부딪혀 악의로 왜곡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시어머니를 찾아와서는 남편이 살인공모죄로 자신과 친정오빠를 고발했다며 흥분하던 아내는 양자입적을 강요하는

남편이 수상하다며 간통죄 고발로 으름장을 놓아 남편의 맘을 돌려보겠다면서 서둘러 문 밖으로 퇴장.

합의 이혼서에 도장을 찍겠다 하는 말에 거나하게 술취해 집에 들어온 남편은 아내와 위자료 문제로 말다툼을 시작하는데, 얘기도중 아내는 부동산투기로 자신이 모은 재산이 모두 남편의 명의로 돼 있어 자신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으며, 딸을 자식 취급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만 친권이 인정된다는 법적현실 앞에서 분개하고 절망한다. (제10장)

이때 남편이 복통을 일으킨다. 놀란 아내가 구급차를 부르려고 뛰쳐나가는데 남편은 과거 독살당하였던 부친 생각이 떠오르자 불신에 차 아내를 붙잡고 늘어진다.

자기집 거실에 서서 이제까지의 진술을 마무리하는 시누이와 올케는 살인미수죄란 당치도 않은 동생의 모략이라고 주장한다. (제11장)

7

마지막 무대는 법정, 검사와 변호사가 유죄냐, 무죄냐를 놓고 설왕설래하는데, 검찰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측 증인으로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남편이 호주로서 가족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혔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러한 상황에까지 자신의 가족을 몰고간 것은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가족법이라고 폭로한다.

마침내 재판관이 불합리한 현행 가족법을 “가정의 불화를 만들어 내고 인류의 불행을 초래하는 범죄자”라고 규정하고 피고에게는 무죄를, “현행 가족법의 남녀차별 조항을 영원히 파기할 것”을 선고하자 남편과 아내는 서로 부둥켜안으며 기뻐하고 막이 내린다.

개정되어야 할 가족법 항목

1.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만아들, 맏손자이면 나이가 적건 많건, 능력이 있건 없건, 원하던 원치 않건 강제로 가장이 되는 오늘의 호주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남녀를 차별해서 친족의 범위를 다르게 정한 법은 고쳐져야 한다.

아버지쪽으로는 8촌까지, 어머니쪽은 4촌까지를 친족으로 하고, 아내는 시아버지쪽 8촌 시어머니쪽 4촌까지가 친족이고 남편의 경우는 장인 장모만이 친족이다. 남녀를 차별해서 정해진 친족의 범위는 고쳐져야 한다.

3. 촌수가 헤아릴 수 없이 멀더라도 성(姓)과 본(本)만 같으면 혼인할 수 없다는 법은 고쳐져야 한다.

4. 이혼할 때는 부부가 서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비록 아내가 가사에만 종사했더라도 혼인중에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권리를 인정하여 일부를 분할청구할 수 있도록 고쳐야 한다.

5. 친권행사에 있어 부모의 뜻이 합치되지 않을 때는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게 된 법은 고쳐져야 한다.

6. 서자는 본처의 동의를 얻어서 입적하도록 해야 한다.

7. 적모와 서자 관계, 계모와 전처소생자녀와의 관계를 친모자 관계로 강요하지 말도록 고쳐야 한다.

8. 자녀없이 사망한 딸의 재산은 친정부모도 사위와 공동으로 상속하게 해야 한다.

9.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는 아내에게는 상속세를 면제하도록 고쳐야 한다.

비록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같이 벌어서 이룬 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몫을 자기가 다시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재산상속에 대해 상속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

건의문 및 결의문

■ 가정법원 전국 설치에 관하여

1963년에 제정된 가사 심판법과 개정 법원 조직법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 가정 법원이 설치되었다.

가사 사건은 일반 민사 사건과는 달리 가족 및 친족간의 분쟁이므로 그 특수성에 비추어 비공개, 조정 전치 등을 원칙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1963년 이후 전국 어느 곳에도 증설되지 않아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은 부당하게 차별을 받고 있다.

이는 법앞에 만인 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헌법과 가정 법원의 전국설치를 천명한 법원 조직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최소한 전국의 지방 법원 소재지만이라도 가정 법원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 법률 부조 사업법 제정에 관하여

가난하고 법을 모르는 국민에 대한 법률 부조 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민주 법치 국가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따라서 세계 선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국가의 정책으로 법률 부조 기관을 설치 운영하며 민간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과 지도, 감독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구조 협회만이 국가 예산으로 이 사업을 벌여 나갈뿐 개인이나 민간의 임의적인 설치 운영에 방임된 상태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개인이나 민간 단체의 임의적 설치 운영에 맡길 것이 아니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은 법률 부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야 할 때이다. 그리하여 법의 보호로부터 외면당하는 억울한 피해자가 없는 정의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법률 부조사업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 가족법 개정에 대하여

1.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과 법앞에 만인 평등의 원칙을 선언한 세계 인권 선언과 남녀 평등의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현행 가족법의 개정을 1990년대로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국회는 전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성의 오랜 숙원인 가족법 개정 문제에 대하여 그 고유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태도로 이를 다루어 하루 빨리 개정할 것을 여성 유권자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1. 우리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모든 항목의 가족법 개정이 실현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가족법 개정 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다 같은 사람인데

나오는 사람들



김경문 / 아들



김유정 / 며느리



김순자 / 변호사



원이섭 / 검사



이동수 / 처남, 경호원



전규자 / 딸, 재판장



전성숙 / 어머니, 이웃



한문중 / 조연출

사탕수수에서 미원!

미원은 발효조미료입니다.

- ❖ 미원은 된장, 간장을 담그듯이 사탕수수의 당밀을 발효하여 만든 발효조미료입니다.
- ❖ 음식 고유의 맛을 더욱 좋게 하는데는 역시 적당량의 미원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 ❖ 미원은 미국, 구라파 일본 등 세계 6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세계인의 조미료입니다.
- ❖ 미원 (MSG)은 미국 FDA(식품의약품관리국)에서 안전한 식품첨가물로 공인된지 이미 오래전입니다.




서울미원주식회사

미원의 맛을 세계로 /
'88서울올림픽공식조미료 미원

사탕수수농장

다함께 부르는 노래

모두가 주인되어

1. 나 이제 보살핌이 필요없어요
철없는 어린애가 아니니까요
나 이제 속삭임도 필요없어요
어여쁜 노리개가 아니니까요
2. 내 사랑하는 이여 걱정말아요
저 멀리 떠나가는 건 아니니까요
당신자리 뺏는 것도 아니합니다
다함께 사는 세상 만드는 것뿐
3. 이제는 누구라도 슬프지 않게
이제는 누구라도 험벗지 않게
이제는 종이되어 눌리지 않게
모두가 주인되어 살아야 해요

(후렴)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나기에
나 이제 주인되어 살아갈래요

돈 타령

돈돈돈 돈에 돈돈
악마의 금전
갑돌이 하고 갑순이 하고 서로 만나서
둘이 둘이 사랑하다 못살겠거든
맑고 푸른 한강수에 풍덩 빠져서
나는 죽어서 화초가 되고
너는 죽어 훨훨 나는 벌나비 되어
내년 삼월 춘삼월
꽃피고 새가 올 때
당신품에 안기거든 난줄 아소서

한걸음 더

- 모두 한걸음 더 나가자
모두 한걸음 더 나가자
낡은 것을 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며
더욱 많은 것을 배운다
새로 만난 많은 것
마음으로 함께 배운다
- 세상 냉정하고 거치나
내게 힘과 사랑 주소서
노래하며 춤추며
이 길따라 가게 하소서

(후렴) 낡은 것을 모두 버리고
손에 손을 잡고 나가자

작은 세상

함께 나누는 기쁨과 슬픔
함께 느끼는 희망과 공포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알았네
작고 작은 이 세상
산이 높아 험해도
바다 넓고 깊어도
우리 사는 이 세상
아주 작고 작은 곳



SINCE 1958
삼익악기

독일「K.Fenner」팀이 설계 개발한 「독일형 삼익피아노」金賞受賞!

「독일형 삼익피아노」, 세계적 권위의 프랑스「Diapason」誌 실시

세계 가정용피아노 품질평가에서 금상 수상.



세계적 권위의 음악전문誌 프랑스「Diapason」誌가 피아노 역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핀란드, 체코, 소련 등 세계 38개 가정용 피아노 품질비교 평가결과, 독일「K.Fenner」팀이 설계 개발한 「독일형 삼익피아노」를 세계정상급 피아노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오로지 삼익피아노가 지난 30년 동안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좋은 피아노, 세계정상의 피아노를 만들겠다는 집념이 낳은 결과입니다.

「독일형 삼익피아노」, 예술적 기준 심사에서 최고 점수 획득.

독일형 삼익피아노가 예술적 기준(음질, 음색, 음량, 음폭, 터치 등) 심사에서는 38개의 피아노중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하여 그 우수성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 세계각국의 피아노품질 비교평가 주요내역

상표 및 생산국	모 델 명	예술적기준 (40점만점)	본질적기준 (20점만점)	부차적기준 (15점만점)	총 점 (75점만점)	순위
삼익피아노(한국)	SU118	31	16	11	58	2
디에트만(영국)	STREAM LINE	24	16	12	52	3
차펠(영국)	H	24	17	10	51	4
가와이(일본)	CX4S	17	13	10	40	10
야마하(일본)	LU210C	30	17	13	60	1
짐머만(동독)	111V	23	11	8	42	9
...	...	...	...	...	...	...

- 예술적 기준 음질, 음색, 음량, 음폭, 터치
- 본질적 기준 프레임, 핀판, 향판, 건반, 액션, 지주
- 부차적 기준 피아노의 해머, 정조, 외장, 현, 부속품

피아노는 소리가 좋아야 명품입니다.

독일형 삼익피아노

☎ 서울영업부 776-777 778-5588

창립 30주년의 해
1956-1986